

의안번호	2209840
의 퇴 인	김위상 의원
회 답 일	2025.7.10.
추 계 번호	25B2320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0조(지역별 사회적 대화의 지원)	위원회는 지역 내 근로자·사용자 등 경제·사회 주체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하여 <u>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u> (제1항)	의무규정
		제1항의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음(제2항) 1. 지역별 사회적 대화 의제 검토 2. 지역별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3. 지역별 사회적 대화 기구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보조 4. 회의 장소, 운영 인력 등 물적·인적 자원의 제공 5. 지역별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주체에 대한 교육 및 자문 6. 지역에서 도출된 의제를 의제개발·조정위원회에 연계·상정 7. 그 밖에 지역별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의무규정
		위원회는 제1항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공동으로 지역별 사회적 대화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제3항 신설)	재량규정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지역별 사회적 대화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있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청년, 여성 등 다양한 경제·사회 주체가 사회적 대화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제4항 신설)	의무규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지원 방법, 절차 및 세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5항 신설)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20조(지역별 사회적 대화의 지원)	×	• 미첨부(제1항~제3항·제5항)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본문참조
		—	• 미대상(제4항) - 개정안은 위원회로 하여금 지역별 사회적 대화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있어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청년, 여성 등 다양한 경제·사회 주체가 사회적 대화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 - 이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2. 상세 사유

- 현행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20조¹⁾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하여금 지역 내 근로자, 사용자 등 경제·사회 주체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20조제1항 및 제2항) 개정안은 지역별 사회적 대화의 지원 규정을 의무조항으로 변경하고(안 제20조제1항), 현재 시행령²⁾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별 사회적 대화의 지원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지원의 내용에 지역별 사회적 대화 기구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보조, 회

1) 제20조(지역별 사회적 대화의 지원) ① 위원회는 지역 내 근로자·사용자 등 경제·사회 주체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16조(지역별 사회적 대화의 지원) 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역별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별 사회적 대화 의제 검토
2. 지역별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3. 지역별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비용 지원
4. 그 밖에 지역별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의 장소·운영 인력 등 물적·인적 자원의 제공, 지역별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주체에 대한 교육 및 자문, 지역에서 도출된 의제를 의제개발·조정 위원회에 연계·상정을 추가하여 규정하는 내용임(안 제20조제2항)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기존 사업의 확대 규모와 신규 사업의 추진 규모에 따라 결정되는데, 고용노동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현행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20조에 근거하여 추진 중인 재정사업은 없으므로,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추진할 신규 사업의 규모에 따라 결정됨
- 그러나 개정안은 지역별 사회적 대화의 지원 방법, 절차 및 세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안 제20조제5항), 세부적인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아 현시점에서 장래에 추진할 신규 사업의 규모 및 내용을 검토하기 어려우므로 소요 비용을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안 제20조제3항) 개정안은 위원회가 지역별 사회적 대화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지역별 사회적 대화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임으로, 개정안의 시행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장래에 체결할 협약의 내용, 성격 등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나 현시점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기 어려우므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곤란하여 추계에 한계가 있음
-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부대의견

□ 없음

I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go.kr